

# 과천도시공사 과천CS사랑나눔위원회 운영지침

제정 2020.02.05. 지침 제17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 “과천CS사랑나눔위원회”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상임이사(본부장)가 되며, 부위원장은 양대노조수석부위원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노조수석부위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, 기부 등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부서에서 추천받아 추천직 위원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재무팀장이 되고, 서기는 본 위원회 업무 담당자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공사의 기부문화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토론하고, 심의 한다.

**제4조 (소집 및 의결)**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관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(해촉)**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하고,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
1.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
2.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

3. 사망, 질병등 기타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 
제8조(회의록)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  
된 것으로 본다.